

충청북도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0년 1월 18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1월 18일

3. 제안이유

가. 도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및 관직명칭 변경

나. 「충북소프트웨어지원센터」 건립으로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에
지역정보산업 육성 지원을 추가하여 현행조례 미비점 보완

4. 주요골자

가. 직제개편에 따른 업무소관 및 관직명칭 변경(안 제7조제3항,
제10조제3항)

- 업무소관 변경 : 기획조정실장 ⇒ 자치행정국장
- 관직명칭 변경 : 정보화담당관 ⇒ 정보통신과장

나. 지역정보화본부 기능 보완(안 제11조제6호)

- 6. 지역정보산업 육성 지원(신설)

5. 검토의견

충청북도 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이는 도 직제개편과 지역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 육성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

도 직제개편으로 정보화담당관실 업무소관이 기획조정실에서 자치행정국으로 이관되고, 관직명칭이 정보통신과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7조 제3항의 기획조정실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, 제7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의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하였으며

지역정보화 촉진 및 정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충북 소프트웨어지원센터를 설립함에 따라 조례 제11조 지역정보화본부의 기능에 “지역정보산업 육성 지원”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(안)